

붙임4 전형별 가점 적용 기준

□ 전형별 가점 기준(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7조 가점적용)

인사규정 시행규칙	제17조(가점적용) ① 직원의 채용 시 가점적용은 별표 2의 가점적용기준에 따른다. ② 국가유공자 가점은 모든 전형단계에서, 그 외 모든 대상의 가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25.12.23> ③ 가점적용은 서류접수 마감일 또는 모집공고에 게재된 날까지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.					
별표 2	대상분야	대상자	가점부여점수(만점기준)			증빙서류
			3%	5%	10%	
	국가유공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	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	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서
	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	본인			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사본
	저소득층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지원대상자	본인			해당 증명서
	청년인턴	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을 모두 근무하여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(단,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채용에 한함)	본인			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
	※ 가점계산 ○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. ○ 동일 분야별 가점적용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한다. ※ 청년인턴 가점은 정규직,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만 적용 ○ 지원서 접수 마감일('26. 9. 25.) 기준 3년 이내('23. 9. 25. 이후) 수료자에 한함					